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외규 정 신설(정부안)	3
2. 주류 기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정부안)	10

1.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제출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외 규정 신설(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제13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제5호) ①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③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④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⑤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①~④ 해당 <단서 신설>	☐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외규정 신설 ○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임원·지배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3)

☐ 개정안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예기치 못한 임원·지배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발생 후 6개월 내 해당 임원 등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 취소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현재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중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중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가. 「조세범 처벌법」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라. 「식품위생법」
 -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제6호 및 제59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²⁾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24년 5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 제조면허 제한 및 취소의 기준이 되는 임원의 범위가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3)에 따른 임원으로 확대되었음.

즉,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등기 임원까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 및 취소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도 임원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 교체 시 주류 제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28.]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면허의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임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임원 등으로 인한 제조면허 취소사유 발생 시 법인 전체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인에 과도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임원 등으로 인한 제조면허 취소사유 발생 시, 해당 임원 등을 6개월 이내 교체하는 경우 허가 취소를 예외로 하는 유예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구성의 변경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인사 문제로 인해 제조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결국,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원 등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타 법률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임원으로 인한 면허취소 예외적용 입법례]

「주류 등 면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⑫ 국세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납세병마개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법 제7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세무사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14. (생략)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19. (생략)

「하수도법」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6. (생략)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147

2. 주류 기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기기 등의 검정(제28조) ☐ (검정의무자)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 ☐ (검정대상)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 ☐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신고의무자)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 ☐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과태료 부과(제38조) ☐ 미검정 용기 등을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유 조정 ☐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 칙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법 시행 전에 미검정 용기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3)

☐ 개정안은 주류 기기 등 검정제도(이하 “검정제도”라 함)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미검정 용기 등 사용시 부과되던 과태료를 미신고 용기 사용시로 변경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⁴⁾

4)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1.2.)

①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②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③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 등 주류제조 규제 완화 추진

□ 검정제도는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⁵⁾

현행법에 따라 주류·밀술 또는 술덧⁶⁾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미검정 용기 등을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주류 기기 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설점검 및 용기검정	263	374	464	623	479

주: 실무적으로 시설 점검과 용기 검정을 같이 실시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밀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기구 및 용기에 번호·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6)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밀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검정제도는 주류 제조 및 저장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기의 용량과 규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류별 시설 기준 충족 여부 및 생산 용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로 제조 및 저장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제조된 제품을 단순히 유통·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함.

이는 판매업자가 완제품만을 취급하므로 검정 대상이 되는 별도의 판매용 용기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 기계·기구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미 면허 신청 단계에서의 시설점검을 통해 확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 이에 개정안은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①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②주류 판매업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고, ③신고대상을 주류 제조·저장 용기로 한정하며, ④이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요건을 미검정 용기 등 사용시에서 미신고 용기 사용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검정 등 관련 규제를 주류의 제조 및 저장 단계로 집중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류 판매업자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결과적으로 이는 주류 제조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력의 낭

비를 줄이며, 신고제도를 통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류 기기 검정은 주류 유통의 안정성 확보와 주류 품질 향상 등 국민보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고 수리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간주규정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류 제조면허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 및 제13조7)에서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 가. 탁주: 500만원 이상
 - 나.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500만원 이상
 - 다.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 라. 맥주: 2천만원 이상
11.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2.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의 검정·검사 및 승인 제도⁸⁾ 역시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국가의 주세 수입 확보는 물론, 주류 유통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⁹⁾

둘째, 개정안은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일반적으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제28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밀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리 간주 규정을 두도록 함.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전문자격이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두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2024 법령 입안 심사 기준 p.157)

하는 형식이나, 개정안의 경우는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은 후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정을 ‘신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로 수정함으로써, 거짓·부정한 신고를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